2019학년도수시모집公



감리교신학대학교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1. 전형요소 반영비율

전형유형	전형명	2019학년도	2018학년도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 종교지도자추천자 교목추천자 교사추천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농어촌학생(정원외)	학생부 80% 면접 20%	학생부 80% 면접 20%
	검정고시출신자	면접 30% 기타(검정고시성적) 70%	면접 30% 기타(검정고시성적) 70%
학생부 (종합)	자기추천자 대안학교출신자	면접 40% 기타(자기보고서) 60%	면접 50% 기타(자기보고서) 50%
기타	재외국민과 외국인	면접 100%	

2. 모집인원 변경

전형유형	전형명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일반전형	111	110
	종교지도자추천자	10	12
학생부	교목추천자	4	5
(교과)	교사추천자	4	5
	사회적배려대상자및 자녀	6	7
	검정고시출신자	15	6

Ⅱ. 모집 단위 · 전공(입학 정원)

케어	계열 모집단위 -		입학정원	
계월	보접인쉬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부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	160	46	

Ⅲ. 전형별 모집인원

모집단위	정원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일반전형	111			
			종교지도자추천자	10			
		항상대 다(그 기)	교목추천자	4			
	저이네	학생부(교과)	교사추천자	4			
	정원내 '부 ' ' ' ' ' ' ' ' ' ' ' ' ' ' ' ' ' '		사회적배려대상자및 자녀	6			
신학부			검정고시출신자	15			
		학생부(종			호나에 버 (ㅈ 호나)	자기추천자	8
			역생구(공업)	대안학교출신자	2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	6			
			재외국민과외국인(2%)	2			
		기타	재외국민과외국인(정원제한없음)				
	계						

^{*}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된 인원은 정시모집 '나'군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Ⅳ.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고
원서접수 (인터넷접수)	7018 9 10143 09 00 ~ 9 14 () 70 00	
서류제출마감	2018. 9. 20.(목) 17:00	도착분에 한함
면 접	<일반전형> 2018. 10. 12.(금) 14:00 <특별전형> 2018. 10. 13.(토) 14:00	본교 종합관
합격자발표	2018. 11. 9.(금) 10:00	본교 홈페이지 (www.mtu.ac.kr)
등록기간 (예치금납부)	2018. 12. 17.(월) ~ 12. 19.(수)	지정은행
미등록충원 합격자발표	2018. 12. 20.(목) ~ 2018. 12. 26.(수) (합격자발표 12. 26.(수), 21:00까지)	본교 홈페이지 (www.mtu.ac.kr)
미등록충원등록마감 (예치금납부)	2018. 12. 20.(목) ~ 2018. 12. 27.(목)	지정은행
최종등록	2019. 1. 30.(수) ~ 2. 1.(금) 17:00	지정은행

∨. 세부 전형별 안내

1. 일반전형

가.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모집단위	전 형 명	모집인원
신학부	일반전형	111명

- * 1) 2019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 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특별전형 복수지원 가능(전형일 확인 후 지원할 것)
 - 3)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자격

- 1) 2019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2) 기독교세례교인
- 3) 학생부 없는 자 지원 불가

다. 전형방법

전 형 명	전형유형	학생부	면접	계
일반전형	학생부	80%	20%	100%
	(교과)	(800점)	(200점)	(1,000점)

- ※ 1) 면접방법 : 자기소개 1~2분 / 2인의 교수가 영성, 인성 등의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 2) 면접활용자료 : ① 학생부 ② 추천서 ③ 자기소개서
 - 3) 면접기준 : ① 대학지원동기 ② 의사표현력 ③ 인성과 적성 ④ 교회활동경력 ⑤ 태도

라. 선발원칙

- 1) 학생부 성적, 면접 성적을 일괄합산 방식에 의거 선발한다.
- 2)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① 학생부 ② 면접 순으로 결정한다.
- 3) 본교 입시사정회에서 입학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정회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정원이 미달되어도 합격을 불허할 수 있다.
- 4) 면접에서 "F"를 받은 자 또는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학생부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 1) 지원자 입력사항(인터넷 입력)
 - 가) 입학원서
- 나) 자기소개서
- 2) 등기우편 발송 서류
 - 가) 담임목사 추천서(소정양식, 세례일 반드시 기재, 밀봉하여 접수)
 - 나) 학교생활기록부
 - · 2014년 2월 ~ 2018년 2월 졸업자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동의자는 제외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온라인 부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다) 졸업자는 출신학교 졸업증명서(온라인 동의자 제외, 온라인 부동의자 및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제출)

2. 종교지도자추천자. 교목추천자. 교사추천자 특별전형

가.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모집단위	전 형 명	모집인원
신학부	종교지도자추천자 교목추천자 교사추천자	10명 4명 4명

- * 1) 2019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일반전형 복수지원 가능(전형일 확인 후 지원할 것)
 - 3)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자격

- 1) 공통사항
 - 가) 2019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및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 나) 기독교세례교인
 - 다) 학생부 없는 자 지원 불가

2) 전형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전 형 명	세부사항
종교지도자추천자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지방 현직 감리사 또는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
교목추천자	출신고교 교목의 추천을 받은 자
교사추천자	출신고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전형방법

전 형 명	전형유형	학생부	면접	계
종교지도자추천자 교목추천자 교사추천자	학생부 (교과)	80% (800점)	20% (200점)	100% (1,000점)

- * 1) 면접방법 : 자기소개 1~2분 / 2인의 교수가 영성, 인성 등의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 2) 면접활용자료 : ① 학생부 ② 추천서 ③ 자기소개서
 - 3) 면접기준 : ① 대학지원동기 ② 의사표현력 ③ 인성과 적성 ④ 교회활동경력 ⑤ 태도

라. 선발원칙

- 1) 학생부 성적, 면접 성적을 일괄합산 방식에 의거 선발한다.
- 2)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① 학생부 ② 면접 순으로 결정한다.
- 3) 본교 입시사정회에서 입학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정회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정원이 미달되어도 합격을 불허할 수 있다.
- 4) 면접에서 "F"를 받은 자 또는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학생부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 1) 지원자 입력사항(인터넷 입력)
 - 가) 입학원서 나) 자기소개서

2) 등기우편 발송 서류

- 가) 담임목사 추천서(소정양식, 세례일 반드시 기재, 밀봉하여 접수)
- 나) 학교생활기록부
 - 2014년 2월 ~ 2018년 2월 졸업자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동의자는 제외
 - 온라인 부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다) 졸업자는 출신학교 졸업증명서(온라인 동의자 제외, 온라인 부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제출)
- 라)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전 형 명	제 출 서 류
종교지도자추천자	• 현직 감리사 또는 감독의 추천서(소정양식)
교목추천자	• 교목추천서(소정양식)
교사추천자	• 교사추천서(소정양식)

3. 자기추천자 특별전형

가.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모집단위	전 형 명	모집인원
신학부	자기추천자	8명

- * 1) 2019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일반전형 복수지원 가능(단, 학생부 있는 자에 한함. 전형일 확인 후 지원할 것)
 - 3)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자격

- 1) 2019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및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 2) 기독교세례교인
- 3) 특정 분야(어학, 음악, 미술, 문학, 체육, 각종경시대회, 사회봉사 등)에서 뛰어난 자질과 재능을 보유하여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 4) 2014년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가능

다. 전형방법

전 형 명	전형유형	자기보고서 (자기추천서)	면접	계		
자기추천자	학생부	60%	40%	100%		
	(종합)	(600점)	(400점)	(1,000점)		

- * 1) 면접방법 : 자기소개 1~2분 / 2인의 교수가 영성, 인성 등의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 2) 면접활용자료: ① 학생부 ② 추천서 ③ 자기소개서 ④ 자기보고서(자기추천서)
 - 3) 면접기준 : ① 대학지원동기 ② 의사표현력 ③ 인성과 적성 ④ 교회활동경력 ⑤ 태도

라. 선발원칙

- 1) 자기보고서, 면접 성적을 일괄합산 방식에 의거 선발한다.
- 2)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① 자기보고서 ② 면접 순으로 결정한다.
- 3) 본교 입시사정회에서 입학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정회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정원이 미달되어도 합격을 불허할 수 있다.
- 4) 면접에서 "F"를 받은 자 또는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보고서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마. 제출서류

- 1) 지원자 입력사항(인터넷 입력)
 - 가) 입학원서 나) 자기소개서

2) 등기우편 발송 서류

- 가) 담임목사 추천서(소정양식, 세례일 반드시 기재, 밀봉하여 접수)
- 나) 학교생활기록부
 - 2014년 2월 ~ 2018년 2월 졸업자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동의자는 제외
 - 온라인 부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다) 졸업자는 출신학교 졸업증명서(온라인 동의자 제외, 온라인 부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제출)
- 라) 자기보고서[소정양식, 자기추천자료(포트폴리오, 수상실적 등)] 20장 이내 작성
- 마)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추가 제출서류
 - 졸업(예정)증명서(해당 고등학교의 학제 및 재학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서 첨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서 첨부)
 - 공증받은 한글 또는 영어번역본 1부
- 바)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온라인 동의자 제외)

4. 대안학교 출신자 특별전형

가.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모집단위	전 형 명	모집인원
신학부	대안학교 출신자	2명

- * 1) 2019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인가 대안학교일 경우 일반전형 복수지원 가능(전형일 확인 후 지원할 것)

나. 지원자격

- 1) 대안학교 출신자로서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 2) 기독교세례교인
- 3) 비인가 대안학교 출신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다. 전형방법

전 형 명	전형유형	자기보고서 (포트폴리오)	면접	계
대안학교 출신자	학생부	60%	40%	100%
	(종합)	(600점)	(400점)	(1,000점)

- * 1) 면접방법 : 자기소개 1~2분 / 2인의 교수가 영성, 인성 등의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 2) 면접활용자료 : ① 학생부 ② 추천서 ③ 자기소개서 ④ 자기보고서(포트폴리오)
 - 3) 면접기준 : ① 대학지원동기 ② 의사표현력 ③ 인성과 적성 ④ 교회활동경력 ⑤ 태도

라. 선발원칙

- 1) 자기보고서, 면접 성적을 일괄합산 방식에 의거 선발한다.
- 2)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① 자기보고서 ② 면접 순으로 결정한다.
- 3) 본교 입시사정회에서 입학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정회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정원이 미달되어도 합격을 불허할 수 있다.
- 4) 면접에서 "F"를 받은 자 또는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보고서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마. 제출서류

- 1) 지원자 입력사항(인터넷 입력)
 - 가) 입학원서 나) 자기소개서
- 2) 등기우편 발송 서류
 - 가) 담임목사 추천서(소정양식, 세례일 반드시 기재, 밀봉하여 접수)
 - 나) 학교생활기록부
 - · 2014년 2월 ~ 2018년 2월 졸업자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동의자는 제외
 - 온라인 부동의자, 비인가 대안학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다) 졸업자는 출신학교 졸업증명서(온라인 동의자 제외, 온라인 부동의자 및 비인가 대안학교 출신자 제출)
 - 라) 교사추천서(소정양식)
 - 마) 자기보고서(포트폴리오 : 일정기간 동안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학생이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 20장 이내 작성)
 - 바) 검정고시 출신자(비인가 대안학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온라인 동의자 제외)

5. 사회적배검대상자 및 자녀 특별전형

가.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모집단위	모집단위 전 형 명 모전	
신학부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6명

- * 1) 2019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일반전형 복수지원 가능(전형일 확인 후 지원할 것)
 - 3)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자격

- 1) 2019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및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 2) 기독교세례교인
- 3) 학생부 없는 자 지원 불가
-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자
 - ②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③ 다자녀가정 자녀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의 자녀
 - ④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순직자 포함)의 자녀
 - ⑤ 환경미화원의 자녀
 - ⑥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⑦ 농어촌 목회 경력이 3년 이상(고교재학기간 3년 포함)된 목회자의 자녀

다. 전형방법

전 형 명	전형유형	학생부	면접	계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학생부	80%	20%	100%
	(교과)	(800점)	(200점)	(1,000점)

- ※ 1) 면접방법 : 자기소개 1~2분 / 2인의 교수가 영성. 인성 등의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 2) 면접활용자료 : ① 학생부 ② 추천서 ③ 자기소개서
 - 3) 면접기준 : ① 대학지원동기 ② 의사표현력 ③ 인성과 적성 ④ 교회활동경력 ⑤ 태도

라. 선발원칙

- 1) 학생부 성적, 면접 성적을 일괄합산 방식에 의거 선발한다.
- 2)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① 학생부 ② 면접 순으로 결정한다.
- 3) 본교 입시사정회에서 입학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정회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정원이 미달되어도 합격을 불허할 수 있다.
- 4) 면접에서 "F"를 받은 자 또는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학생부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 1) 지원자 입력사항(인터넷 입력)
 - 가) 입학원서 나) 자기소개서
- 2) 등기우편 발송 서류
 - 가) 담임목사 추천서(소정양식, 세례일 반드시 기재, 밀봉하여 접수)
 - 나) 학교생활기록부
 - 2014년 2월 ~ 2018년 2월 졸업자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동의자는 제외
 - 온라인 부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다) 졸업자는 출신학교 졸업증명서(온라인 동의자 제외, 온라인 부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제출)
 - 라) 지원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전 형 명	제 출 서 류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보훈처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다자녀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용)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순직자 포함)의 자녀	보호자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환경미화원의 자녀	• 보호자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증명서 제출) ② 기초생활수급증명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④ 학교장 추천서(소정양식)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 복지급여수급자(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한 증명서 제출) ② 차상위복지급여 수급 확인서(시.군.구청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 자활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⑥ 차상위 건강 본인부담경감 사업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발행) ⑥ 학교장 추천서(소정양식) ⑥ 주민등록등본 ⑩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촌 목회 경력이 3년 이상(고교재학기간 3년 포함)된 목회자의 자녀	 보호자 재직증명서 (시무기간 명시, 연회, 노회, 지방회 등의 상위 감독기관장의 확인)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및 지원자 주소 변경내용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전 이력전체가 기재된 것)

6.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

가.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모집단위	전 형 명	모집인원
신학부	검정고시 출신자	15명

※ 2019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나. 지원자격

1) 검정고시 출신자 2) 기독교세례교인

다. 전형방법

전 형 명	전형유형	검정고시성적	면접	계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부 (교과)	70% (700점)	30% (300점)	100% (1,000점)

※ 1) 면접방법 : 자기소개 1~2분 / 2인의 교수가 영성, 인성 등의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2) 면접활용자료 : ① 추천서 ② 자기소개서

3) 면접기준 : ① 대학지원동기 ② 의사표현력 ③ 인성과 적성 ④ 교회활동경력 ⑤ 태도

라. 선발원칙

1) 검정고시 성적, 면접 성적을 일괄합산 방식에 의거 선발한다.

2)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① 검정고시 성적 ② 면접 순으로 결정한다.

3) 본교 입시사정회에서 입학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정회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정원이 미달되어도 합격을 불허할 수 있다.

4) 면접에서 "F"를 받은 자 또는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검정고시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마. 제출서류

1) 지원자 입력사항(인터넷 입력)

가) 입학원서

나) 자기소개서

2) 등기우편 발송 서류

가) 담임목사 추천서(소정양식, 세례일 반드시 기재, 밀봉하여 접수)

나)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온라인 동의자 제외)

7.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가.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모집단위 전 형 명		모집인원
신학부	농·어촌 학생(정원외)	6명

- ※ 1) 2019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 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일반전형 복수지원 가능(전형일 확인 후 지원할 것)
 - 3)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자격

-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 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한 농•어촌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가)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학생의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어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인 자
 - 나)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부·모·학생 모두의 거주지 및 학생의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어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인 자
- 2) 기독교세례교인
- 3) 학생부 없는 자 지원 불가
- 4)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 5)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다. 전형방법

전 형 명	전형유형	학생부	면접	계
농·어촌 학생	학생부	80%	20%	100%
	(교과)	(800점)	(200점)	(1,000점)

- * 1) 면접방법 : 자기소개 1~2분 / 2인의 교수가 영성, 인성 등의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 2) 면접활용자료 : ① 학생부 ② 추천서 ③ 자기소개서
 - 3) 면접기준 : ① 대학지원동기 ② 의사표현력 ③ 인성과 적성 ④ 교회활동경력 ⑤ 태도

라. 선발원칙

- 1) 학생부 성적, 면접 성적을 일괄합산 방식에 의거 선발한다.
- 2)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① 학생부 ② 면접 순으로 결정한다.
- 3) 본교 입시사정회에서 입학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정회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정원이 미달되어도 합격을 불허할 수 있다.
- 4) 면접에서 "F"를 받은 자 또는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학생부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 1) 지원자 입력사항(인터넷 입력)
 - 가) 입학원서
- 나) 자기소개서
- 2) 등기우편 발송 서류
 - 가) 담임목사 추천서(소정양식, 세례일 반드시 기재, 밀봉하여 접수)
 - 나) 학교생활기록부
 - 2014년 2월 ~ 2018년 2월 졸업자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동의자는 제외
 - 온라인 부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다) 졸업자는 출신학교 졸업증명서(온라인 동의자 제외, 온라인 부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제출)
 - 라) 학교장 추천서(소정양식)
 - 마)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및 지원자 주소 변경내용 기재)
 - 바)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전 이력전체가 기재 된 것)
 - 사)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아) 부와 모의 직장소재지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등 / 재직기간 명시)
 - 자) 지원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지원자격 : 중 고등학교 전교육과정 이수자)
 - 차) 지원자 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지원자격 : 초 중 고등학교 전교육과정 이수자)

8.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모집단위	전 형 명	모집인원	비고
신학부	입학정원 2%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2명	순수외국인 등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별도 모집

- * 1) 2019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2)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 학생의 전공별 배정인원은 학부제 전공배정 절차에 따릅니다.

나. 지원자격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다음 각 가), 나)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독교세례를 받고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가) 기본학력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①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②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나)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①일반적 자격기준

				해외	재학	:.거주	체류	기간	
구 분	지원 자격	7	학 신	}		보호자	}	배	우자
1 &	11 2 117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 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_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 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 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 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 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 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학생(학생 본인만 외국인)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 상 수료한 외국인	2년	2년	2년					

② 기타 재외국민 (종전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대상자)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			류기간	
대 상	지 원 자 격	į	학 성	H	3	ᄎ	}	배우	작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선교사 자녀	감리교단 소속단체에서 해외에 파견하여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선교요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 소속연회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목회자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일반적 자격 기준 주요 해설

●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 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예: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 해외파견 근무자의 배우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반 체류 및 거주 의무 여부, 기간은 자율 설정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①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②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 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학생 본인만 외국인) 주요 해설

● 재학기간의 기준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을 의미함.
- 외국 국적 취득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호자 등의 조건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 사 대상이 아님.

2) 정원 제한 없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다음 각 가)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독교세례를 받고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가) 일반적 자격기준

		3	티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ŀ
대 상	지 원 자 격		학 신	H	보호자			배우자	
711 0		재학	거 주	체 류	근무	거 주	체 류	거 주	체 류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저벌 이스하 재이구마 마 이구의 고하철가를 받은 결혼이	12	12	12					
제 작곡한 호 외국인				년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등일 <u>-</u> 확인		-	-	-	-	ı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국국	-적		외-	국국	-적	

3) 재외국민(정원 2% 인내) 입학허용 기간 제한

: 졸업학년도 개시일(3학년 1학기 초)로부터 2년 6개월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주요 해설

● 전교육과정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단, 불가피한 국가 사정에 의해 모 국 수학한 경우는 대학별 확인).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보호자 등의 조건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북한이탈주민 주요 해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98조)

- ㅇ 북하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o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 ㅇ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인정

- o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o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 북하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 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 외국인 주요 해설

● 재학 인정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복수 국적자 제외)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다. 전형방법

전 형 명	면접	계
재외국민과외국인	100% (1,000점)	100% (1,000점)

- * 순수외국인은 서류전형 및 면접 실시(필요한 경우 전화인터뷰 실시)
 - ※ 1) 면접방법 : 자기소개 1~2분 / 2인의 교수가 영성, 인성 등의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 2) 면접활용자료 : ① 학생부 ② 추천서 ③ 자기소개서
 - 3) 면접기준 : ① 대학지원동기 ② 의사표현력 ③ 인성과 적성 ④ 교회활동경력 ⑤ 태도

라. 선발원칙

- 1) 면접시험 성적에 의거 선발한다.
- 2)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외국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많은 자로 결정한다.
- 3)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대학에서 정하는 사정원칙에 따라 합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4) 면접에서 "F"를 받은 자 또는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1) 외국 근무 재외국민(공무원, 상사직원 등의 자녀)
 - 가)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나)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다)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라)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마)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 바)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 사)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학생)
 - 아)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2) 외국영주 재외국민(교포자녀 등)
 - 가)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다) 초 ·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라)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 마)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바)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 사) 재외국민 등록필증(보호자, 학생)
- 3)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가)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나)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다) 초.중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 라)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4)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학생 본인만 외국인)
 - 가)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나)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다)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라)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마)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제)적 등본)
 - 바) 외국국적증명서(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사)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5)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가)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다) 초 · 중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라) 출입국 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마) 전가족 호적등본
 - 바) 외국국적 증명서(부, 모, 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사)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 아) 재정보증서류
 - ※ 공통필수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 또는 부모(재정보증인)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 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② 재산세 과세증명서
 - ③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소정양식)
 - 자) TOPIK 성적표(3급 이상)
- 6)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가)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다) 초 · 중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라) 출입국 사실증명서(학생)

- 마) 전가족 호적등본
- 바)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사)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아) 재정보증서류
 - ※ 공통필수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 또는 부모(재정보증인)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 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② 재산세 과세증명서
 - ③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소정양식)

자) TOPIK 성적표(3급 이상)

7) 북한이탈주민

- 가)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다)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초등교육법 시행령 98조3항)

8) 기타 재외국민

- 가)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나)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다)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 라)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마)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 바)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 사)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학생)
- 아)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 외국의 국·공·사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인 경우

당국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받은 후에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의 "재외교육 기관확인서" 및 "영사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 정부 국무부의 인증사무소(Secretary of State)에서 발급합니다.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문의처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영사서비스/비자'에서 자세히 알수 있으며, 외교부 02-2100-7600, 또는 법무부 02-720-802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현황 113개국

	,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16)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어지역, 대청구(10)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니우에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유럽 (52)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
Z1 lal (00)	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중남미 (28)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
	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아프리카 (11)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u> </u>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5)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상단 메뉴 오른쪽 '외교부 소개', 세부메뉴 '재외공관' 클릭 → 해당 지역 별(대륙) 홈페이지 클릭 → 해당국가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명 클릭(해당 공관 홈페이지 이동) → 상단 메뉴 '영사', 보통 세부메뉴 '공증'란 클릭하면 관련 문서 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문서에서 관련정 보 확인 가능

** 최신 협약가입국 현황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 (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음

Ⅵ. 제출서류 안내사항

1. 서류 제출 방법

모집시기	서류 제출 기간	서류 도착 확인
수시	2018. 9. 20.(목) 17:00까지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2. 제출처 : (우)03745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56 감리교신학대학교 학부교무처 입시담당자

3. 제출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서류제출가이드를 참고하여 발송용 봉투라벨을 출력해서 봉투에 부착한 후 등기 우편으로 발송

4.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는 2018년 9월 20일(목) 17:00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미도착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합니다.
- 나.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8년 9월 20일(목) 24:00까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마감 후 9월 20일(목)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모집요강에 위배된 입학원서와 지원자격이 미달된 입학원서는 무효로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Ⅷ.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학년	별 반영비	율(%)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
총점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출결상황	봉사활동	계	(%)
800점	100	100	100	90	5	5	100	80

2. 반영 교과

- 가. 반영교과목
 - ① 1학년 국어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학년별 각 1과목(3과목)
 - ② 2학년 국어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또는 과학교과 학년별 각 1과목(3과목)
 - ③ 3학년 국어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또는 과학교과 학년별 각 1과목(3과목)
- 나. 지정 교과목이 없을 경우
 - ① 사회교과목 또는 과학교과목
 - ② 제2외국어 교과목 순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③ 그 외는 본교에서 대체과목 순에 의거 지정한다.
- 다. 교과목 성적 산출
 - 1) 2008년 2월 ~ 2018년 2월 졸업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 ① 학교생활기록부에 표기된 석차등급(1~9등급)을 활용하여 반영
 - ② [점수 평균산출 공식] : 최고점수 720점, 기본점수 360점 기본점수 + {((9-반영과목의 평균등급)/8)X(최고점수-기본점수)}
 - 2)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 ① 학교생활기록부에 표기된 학업성취도(평어)를 5등급화 하여 반영
 - ② [점수 평균산출 공식] : 최고점수 720점, 기본점수 360점 기본점수 + {((5-반영과목의 평균등급)/4)X(최고점수-기본점수)}

학업성취도	수	우	0	향	가
등 급	1	2	3	4	5

3. 비교과성적 반영

구 분	사고결석일수	점수	봉사시간	점수
최 고 점	0일	40	40시간 이상	40
최 저 점	20일 이상	20	20시간 이하	20
등급간 점수차	결석일 1일당	1	봉사시간 1시간당	1

Ⅷ. 지원자 유의사항

1. 고등교육법 기본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 1)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산업대학 · 전문대학 제외)
- 2)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됩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

-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대학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2)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 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3)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 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이중등록 금지

- 1)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 2)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 3)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2. 대학별 유의사항

- 가. 본교의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단, 특별전형 간 복수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시모집 지원횟수는 2회가 됩니다.
 - 나. 수시모집 지원자는 본교 및 타교 수시모집을 포함하여 최대 6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수험생이 6회 이상의 원서접수를 실시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 다.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합격과 입학이 모두 취소됩니다.
 - 라.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예치금 납부자 포함)해야 하며,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합격과 입학이 모두 취소됩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타 대학에 등록의사가 있는 합격자는 본교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 마.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접수 마감 당일(2018년 9월 14일) 20:00시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포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나. 유아세례인 경우에는 입교일 또는 유아세례일자를 기재합니다.
- 다. 지원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보호자 전화번호(추가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이를 잘못 기재하 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원서접수 시 사진을 첨부(업로드)해야 하므로 사진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진(3cm X 4cm)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 마.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각 항목별로 1,000자~1,500자 이내로 직접 작성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 **자기소개서는 2018년 9월 20일(목) 24:00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마감 후 9월 20일(목)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사. 수험표를 출력하여 2018년 10월 12일(금), 13일(토) 전형일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아. 제출서류는 2018년 9월 20일(목) 17:00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미도착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합니다.
- 자.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지원자 가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IX. 등록 및 환불 안내

- 1.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2.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안내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3. 합격자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4. 합격자의 신체검사는 합격통지서 교부 시 배부하는 신체검사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등록 포기자가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포기각서(소정양식)와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본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 취소 및 등록금 환불을 위한 등록포기각서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www.mtu.ac.kr)
- 6.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이 사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X. 전형료

1. 전형료

전형구분	전형료
일반전형, 종교지도자추천자, 교목추천자, 교사추천자, 자기추천자 대안학교출신자, 검정고시출신자, 농·어촌학생	60,000원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특별전형	35,000원
재외국민과 외국인	70,000원

2. 전형료 반환

- 가.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지원자가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사정은 반환불가.)
- 다.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19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 라. 전형료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대상자가 본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입학원서 작성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 마.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 서 금융 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XI. **장학금**

	장학금명	수혜자격	장학금액
	신입생 장학금	입학생 성적우수자	4년 · 2년/등록금 전액
	성적 장학금	매학기 성적우수자	수업료의 100~30%
	공로(임원) 장학금	학교명예·발전에 기여한자나 학생활동에 기여한 자	수업료의 100~25%
	교역자자녀 장학금	본 교단 교역자 중 박봉교회자 직계자녀	수업료의 35%
교내장학금	장애학우 장학금	지체2급 이상 장애학우	수업료 1/3
	군종사관후보생 장학금	군종사관후보생 중 성적우수자	일정금액
	소망장학금	생활형편이 지극히 곤란한 자로 성적우수자	일정금액
	보훈 • 통일부 장학금	국가유공자 및 새터민으로 성적우수자	등록금 반액
	근로장학금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	일정금액
	교회장학금	성적우수자 및 지정학생	기탁금액
그이자나하나그	장학단체 장학금	성적우수자 및 지정학생	기탁금액
교외장학금	개인기탁 장학금	성적우수자 및 지정학생	기탁금액
	보훈•통일부 장학금	국가유공자 및 새터민으로 성적우수자	등록금 반액

신입생 장학금(*수석 : 4년 장학금, *차석 : 2년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 입학금 면제)